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01 |
|----------|-----|

제출년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법 시행령』 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청사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안 제4조,5조)

-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장치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2011.6.1)임.

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2항)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개정
- 개정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수립 의결 : 예산편성 전 ⇒ 예산의결 전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 : 추경편성 전 ⇒ 추경의결 전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대상시설 구체화(안 제22조의2 신설)

●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안)

⇒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공유재산 심의회)

⇒ 갱신가능 대상시설 :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한정

마.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금액 상향 조정(안 제35조제2항)

● 개정안 :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 상향 조정(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바. 군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신설(안 제47조의2)

● 신설안

- 본청 청사 기준 면적 : 8,385제곱미터

- 군수 집무실 기준 면적 : 99제곱미터

- 의회 청사 기준 면적 : 1,506제곱미터

사. 1급 관사(군수 관사) 면적기준 신설(안 제51조의2)

● 신설안

-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아.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금액 상향 조정(안 제63조제1항)

● 개정안 :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 상향 조정(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자.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용어 등 변경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로 용어 변경
-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 지방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명칭), 도시첨단산업단지(추가)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11. 9. 27 ~ 2011. 10. 17(21일간 실시), 의견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를 “매각하려면”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5조제1항제7호(중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에 규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를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각한”을 “매각하였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다음 연도 예산의결”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언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확정된”을 “확정되었을”로 하며,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부속토지에 한한다”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을 “영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 다음 각호”를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로,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를 “사용·수익허가를 해”로 한다.

제21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제2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3조 중 “제25조 내지 제37조”를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

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제30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층건물”을 “2층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층건물”을 “1층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지하3층이하”를 “지하3층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지하3층이하”를 “지하3층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30%”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달러이상인”을 “2천만달러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32조제1항제1호바목 중 “가목 내지 다목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군 관할지역내”를 “군내”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다목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군 관할지역안으로”를 “군내로”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군 관할지역내”를 “군내”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34조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로, “사유건물에 의하여”를 “사유건물에”로, “매각하는 때”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3항제2호 중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를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으로, “연장하는 때”를 “갱신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를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규정”을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 가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을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에 따라”로,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참작”을 “고려”로,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506제곱미터

제48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하려면 「평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하려면”으로, “범위안”을 “범

위”로 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을 “조례에서“관사”란”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제53조제4호 중 “제 공과금”을 “공과금”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제1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을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 허위서류”를 “그 밖에 거짓서류”로, “사인명의”를 “사인(私人)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u></p> <p>제2조(관리책임) ①<u>군수</u>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u>군수</u>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14조</u>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u>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u> 받아야 한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u>법 제16조</u>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p> | <p><u>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p> <p>제2조(관리책임) ①<u>평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br/>-----.</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제2항에 따른</u> -----<br/>----- 지정에 -----<br/>-----.</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u>군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br/>----- <u>제14조에 따라</u> -----<br/>-----<br/>-----.</p> <p>②<u>제1항에 따라</u> -----<br/>-----<br/>-- 매각하려면 -----<br/>-----.</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u>법 제16조에 따라</u> -----</p> |

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균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 4. (생략)

<신설>

<신설>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략)

4.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대부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7. 그 밖에 -----  
-----  
---

② (현행과 같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  
-----

2. ----- 제57조제1항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서식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따른 -----  
-----  
-----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  
-----  
-----  
-----.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  
각 호 -----.

1. ~ 6.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대체재산 취득)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③-----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  
-----  
-----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매각하였을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영 제7조에 따른 -----  
----- 다음 연도 예산의결 -----  
----- 받아 -----  
-----  
----- 의결하기 -----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 받아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법령에 따라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확정되었을 --  
-----  
--- 규칙으로 -----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라 -----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위-----  
-----  
-----  
-----  
--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 하는

제17조(무상사용기간) ----- 영 제17조 -----  
-----  
-----  
-----  
-----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할 -----  
-----  
----- 해당 재산-----  
-----  
-----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 사용·수익허가를 해-----.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 갖추어 두고 -----  
-----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 경우에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영 제21조에 따른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  
영 제14조에 따라 -----  
-----.

③제1항에 따라 -----  
-----  
-----  
-----  
-----  
-----  
-----  
-----.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  
----- 인정하는 -----  
-----  
-----

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 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신 설>

-----.

⑤ 일반입찰-----  
----- 제27조제4항  
에 따른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  
-----  
-----.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

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게을리하여 -----  
-----  
법 제35조에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 제7호, 제30조, 제32조제 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 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  
-----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 각 호-----.

1. -----  
----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2. -----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
3. -----  
----- 제2조에 따른 -----



1.·2. (생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

1.·2.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해당 -----  
-----.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  
-----.

④---- 각 호-----  
-----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  
-----  
-----  
-----

3. -----  
-----제19조제1항에 따른 -----  
-----  
-----  
-----

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 부하는 경우

4. (생 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 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에 이전하는 때

6. 군 관할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 축하는 때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 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 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 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 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 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

-----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 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평창군 (이하 “군” 이라 한다) 내로 이 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 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 을 신축하는 경우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 제1항에 따른 -----

-----  
-----  
-----  
-----  
----- 세제공미 터당 -----  
-----

②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 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공미터당 반 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

-----

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균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나. (생략)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그  
밖에 -----  
-----.

⑤ 제1항에도 -----  
-----  
-----  
-----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각 호 -----  
-----.

1. ----- 2층 건물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3층 이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  
-----  
-----

⑤ -----  
-----  
----- 매우 -----  
-----  
----- . -----  
-----  
-----  
-----  
-----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  
-----  
-----  
-----  
-----  
-----  
-----  
----- 각 호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생략)

1. ----- 각 목의 어느 하나-----  
-----  
-----.

가. 「조세특례제한법」 -----  
-----  
-----

나. ----- 2천  
만달러 이상인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  
-----  
---- 군내-----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  
----

2. ----- 각 목의 어느 하나-----  
-----  
-----.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생략)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지역내로 이전하는

나. 1일 평균 -----  
-----

다. (현행과 같음)

라. -----  
-----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 군내로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3. ----- 각 목의 어느 하나-----  
-----  
-----.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 군내-----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②-----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에 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②-----  
-----  
-----  
----- 상응하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  
-----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제34조에 따라 해당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  
-----  
-----.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  
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  
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  
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 100만원 -----  
-----

2. 200만원 -----  
-----

3. 300만원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  
-----  
-----  
-----  
-----  
-----  
-----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갖추어 두어야 -----  
-----

②----- 각 호  
-----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  
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  
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  
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  
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  
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

-----  
----- 각 호-----  
-----.

1. ----- 지방자치단  
체-----  
----- 매각하는 경우

2. -----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  
-----  
-----  
사유건물에 -----  
-----  
----- 매각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  
는 경우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10년 이내-----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4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  
-----  
----- 각 호 -----  
-----.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2.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5년 이내 -----  
-----  
----- 각 호 -----  
-----.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  
-----  
-----  
-----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

----- 갱신하는 경우

3. 그 밖에 -----  
-----  
-----  
-----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  
-----  
-----  
-----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  
-----  
-----  
-----  
-----  
-----.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4.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

-----  
-----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이 경우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나.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 따른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

----- 목-----

가. -----

----- 「건축법」 제57조제1항

나. -----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5. (생략)

6.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까지 매수신청한 토지에 한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가목-----  
-----  
-----.

5. (현행과 같음)

6. -----  
-----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 경우 -----  
-----  
-----  
-----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  
----- 고려-----  
----- 타당성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 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 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  
-----.

제46조(청사의 부지) -----  
-----  
-----.  
-----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따라 -----  
----- 각 호-----  
-.

1.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  
-----.

③----- 제1항에 따른 -----  
-----.

<신 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506제곱미터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  
-- 건축하려면 「평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신축하려면 -----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란 -----  
-----  
-----.

<신 설>

제53조(사용책임) (생략)

- 1. ~ 3. (생략)
-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

- 1. · 2. (생략)
-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제53조(사용책임)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  
----- 공과금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 제53조에 따른 -----  
-----  
-----
- 4. 그 밖에 -----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 1. -----  
인공구조물 -----  
-----

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3. (생략)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 8. (생략)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  
-----

2.·3. (현행과 같음)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 8.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제56조에 따라 -----  
--.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  
-----  
-----  
-----.

②제1항-----  
-----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1조(준용) -----  
-----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  
----- 각 호-----

- 1. 100만원 -----
- 2. 200만원 -----  
-----
- 3. 300만원 -----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  
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  
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금 지급) ① (생 략)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  
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  
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  
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  
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  
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  
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  
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4. 400만원 -----  
-----

②----- 영 제  
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  
-----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 각 목-----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거짓서류-----  
----- 사인(私人)  
명의-----  
-----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  
-----  
-----.

②-----  
-----  
-----  
-- 2명 -----  
-----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귀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7.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19, 타법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8.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 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8.4]

[별표 1] <신설 2010.8.4>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 구 분 |                       | 기 준 면 적 (㎡)      |         |
|-----|-----------------------|------------------|---------|
| 시   | 인구 10만 미만             | 11,893㎡          |         |
|     |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 13,965㎡          |         |
|     |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 17,759㎡          |         |
|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 18,907㎡          |         |
|     |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 19,098㎡          |         |
|     |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 20,214㎡          |         |
|     |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 21,968㎡          |         |
|     | 인구 100만 이상            | 22,319㎡          |         |
| 군   | 인구 3만 미만              | 7,525㎡           |         |
|     | <b>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b> | <b>8,385㎡</b>    |         |
|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 9,406㎡           |         |
|     | 인구 10만 이상             | 11,829㎡          |         |
| 구   | 특별시의<br>자치구           | 인구 50만 미만        | 26,368㎡ |
|     |                       | 인구 50만 이상        | 27,484㎡ |
|     | 광역시의<br>자치구           | 인구 10만 미만        | 11,861㎡ |
|     |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 12,020㎡ |
|     |                       |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 14,061㎡ |
|     |                       | 인구 50만 이상        | 18,206㎡ |

※

비고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 2]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구 분 | 특별시,<br>광역시, 도,<br>특별자치도 | 시             |                   | 군          | 자치구 |
|-----|--------------------------|---------------|-------------------|------------|-----|
|     |                          | 행정구가<br>설치된 시 | 행정구가<br>설치되지 않은 시 |            |     |
| 면 적 | 165.3㎡                   | 132㎡          | 99㎡               | <b>99㎡</b> | 99㎡ |

※ 비고: 기준면적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 구 분 |                       | 기 준 면 적 ( m <sup>2</sup> ) |                     |                     |
|-----|-----------------------|----------------------------|---------------------|---------------------|
| 시   | 인구 10만 미만             | 1,853m <sup>2</sup>        |                     |                     |
|     |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 2,257m <sup>2</sup>        |                     |                     |
|     |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 3,351m <sup>2</sup>        |                     |                     |
|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 3,429m <sup>2</sup>        |                     |                     |
|     |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 4,713m <sup>2</sup>        |                     |                     |
|     |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 4,851m <sup>2</sup>        |                     |                     |
|     |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 6,209m <sup>2</sup>        |                     |                     |
|     | 인구 100만 이상            | 6,597m <sup>2</sup>        |                     |                     |
| 군   | 인구 3만 미만              | 1,358m <sup>2</sup>        |                     |                     |
|     | <b>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b> | <b>1,506m<sup>2</sup></b>  |                     |                     |
|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 1,787m <sup>2</sup>        |                     |                     |
|     | 인구 10만 이상             | 1,830m <sup>2</sup>        |                     |                     |
| 구   | 특별시의                  | 인구 50만 미만                  | 2,961m <sup>2</sup> |                     |
|     | 자치구                   | 인구 50만 이상                  | 4,172m <sup>2</sup> |                     |
|     | 광역시의                  | 자치구                        | 인구 10만 미만           | 1,358m <sup>2</sup> |
|     |                       |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 1,698m <sup>2</sup> |
|     |                       |                            |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 2,581m <sup>2</sup> |
|     |                       |                            | 인구 50만 이상           | 4,172m <sup>2</sup> |

비고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  
면적은 제외한다. 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  
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②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부록]

청사 시설 기준표

| 용도별    | 시설명              | 기준                                                      | 비고                                                     |
|--------|------------------|---------------------------------------------------------|--------------------------------------------------------|
| 업무시설   | 1. 순사무실          | ※ [별표1]과같음                                              | 20인 이하는 50㎡<br>주방포함                                    |
|        | 2. 상황실           |                                                         |                                                        |
|        | 장관급 기관<br>차관급 기관 | 165㎡<br>132㎡                                            |                                                        |
| 보조시설   | 3. 회의실           | 50㎡+0.7㎡(정원-20인)                                        | 일반용도용 창고 및 문서고를 말하며,<br>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br>적용할 수 있다. |
|        | 1. 식 당           | 정원 × 1.5㎡ × 1/3                                         |                                                        |
| 저장시설   | 1. 창 고           | 순사무실면적 × 7%                                             | 출입면적 별도산정                                              |
|        | 2. 문서고           | 순사무실면적 × 7%                                             |                                                        |
| 관리시설   | 1. 수위실           | 근무자수 × 3㎡                                               | 출입면적 별도산정                                              |
|        | 2. 당직실           | 당직자수 × 10㎡                                              |                                                        |
|        | 3. 차 고           | 대형차20㎡ × 관용차량 수<br>중형차15㎡ × 관용차량 수<br>소형차13.2㎡ × 관용차량 수 |                                                        |
|        | 4. 지하주차장 등       | 45㎡                                                     |                                                        |
|        | 5. 운전원대기실        | 운전원수 × 1.65㎡                                            |                                                        |
| 편의시설   | 1. 휴게실           | 9.9㎡+(정원-24인)×0.22㎡                                     | 정원 24인 미만 제외                                           |
|        | 2. 이발실           | 6.6㎡+(정원-60인)×0.1㎡                                      | 정원 60인 미만 제외                                           |
|        | 3. 의무실           | 22㎡+(정원-100인)×0.048㎡                                    | 정원 100인 미만 제외                                          |
|        | 4. 체육실           | 75㎡+(정원-100인)×0.16㎡                                     | 정원 100인 미만 제외                                          |
| 주거시설   | 1. 관사(독립)        |                                                         | 1실 2인기준                                                |
|        | 장관급              | 231㎡                                                    |                                                        |
|        | 차관급              | 198㎡                                                    |                                                        |
|        | 1급 기관장           | 165㎡                                                    |                                                        |
|        | 2.3급기관장          | 116㎡                                                    |                                                        |
|        | 4급 기관장           | 83㎡                                                     |                                                        |
|        | 5급 기관장           | 66㎡                                                     |                                                        |
|        | 6급이하             | 50㎡                                                     |                                                        |
|        | 2. 관사(아파트)       |                                                         |                                                        |
|        | 장관급              | 198㎡                                                    |                                                        |
|        | 차관급              | 165㎡                                                    |                                                        |
|        | 차관보.1급           | 132㎡                                                    |                                                        |
|        | 2. 3급            | 99㎡                                                     |                                                        |
|        | 4급               | 66㎡                                                     |                                                        |
|        | 5. 6급            | 50㎡                                                     |                                                        |
|        | 3. 기숙사           | 대상자수 × 14.5㎡                                            |                                                        |
| 4. 합숙소 | 대상자수 × 8㎡        |                                                         |                                                        |

※ 기타 : 각부서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 등은 당해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 적용할 수 있다.